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법률 정보 안내 사례집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법률 정보 안내 사례집





Contents

발 간 사	06
-------	----

정 광 영 법무관(2013. 9 ~ 2014. 5) |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01 “성년후견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10
02 10년 전 산 불법건강보조식품 채무독촉 해결사례	12
03 채무를 상속받은 가정에 힘이 된 한정승인심판	14
04 유언에 대하여 알아보자	16
05 전과기록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20
06 주민등록증없이 살아온 한 평생, 이제는 아닙니다.	22
07 존엄사와 사전의료 의향서	24
08 소녀가장, 영구임대아파트를 승계받다.	26
09 한국인이 되고픈 두 아이의 엄마	28

양 영 화 변호사(2014. 6 ~ 2014. 12) |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10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그 대처 방법!	32
11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도록 도운 사례	34
12 가정폭력 피해자 A씨를 도운 사례	36
13 오해하기 쉬운 법률상식	38
14 채무조정제도	40
15 배상명령신청관련 사례	42
16 두 자매의 네버엔딩 스토리... 해피엔딩을 위한 손길!	44

황 인 철 변호사(2015. 2 ~) |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17 행복을 지켜라! 행복지킴이 통장	48
18 가족의 채무도 갚아야 할까요?	50
19 초상권	52
20 아동학대 신고의무	54
21 새로운 사회보장급여 제도	56
22 협의이혼시 의무 상담제도	57



23	지급명령이란?	58
24	금연구역	59
25	개인정보보호 I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60
26	개인정보보호 II -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61
27	소송구조제도 I - 대한법률구조공단	62
28	소송구조제도 II - 취약계층이 비용부담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다면?	64
29	몰래 녹음하면 처벌을 받을까?	66
30	자식 없이 돌아가신 어르신 재산 어떻게 될까?	68
31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70
32	가정폭력 가해자는 무조건 범죄자로 처벌될까?	72
33	알미운 사위가 유일한 상속인?	74
34	국민참여재판	76
35	업무방해죄란?	78
36	도장이 빠진 유언장	80
37	민사조정제도	82
38	채권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84
39	공소시효 제도	86
40	세탁기에서 돈을 꺼내간 범인들	88
41	업무상 주의의무	90
42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92
43	채무에서 벗어난 소송구조 사례	94
44	소년 가정의 상속관련 문제	96
45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인생	98
46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100
47	통장에서 사라진 기초생활수급비	102
48	이자의 최고 한도는?	104
49	억울한 처벌 위기에 놓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도움을 준 사례	106
50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례	108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법률 정보 안내 사례집」을 펴내며...

법률홈닥터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근무하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서민들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법률홈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해 9월부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정보와 상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제주사회복지신문’에 매월 1건씩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제주사회복지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50회 분량에 이르러 모음집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한데 엮어 보니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 확신에는 그동안 저희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법률홈닥터로서 애써 주신 정광영 법무관님과 양영화 변호사님, 현재까지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황인철 변호사님의 열정어린 노고가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행되는 사례집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 협의회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와 ‘사회복지인권사랑방’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2.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고치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정 광 영 법무관
제주지역 법률홍탁터
(2013. 9 ~ 2014. 5)



“성년후견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10
10년 전 산 불법건강보조식품 채무독촉 해결사례	12
채무를 상속받은 가정에 힘이 된 한정승인심판	14
유언에 대하여 알아보자	16
전과기록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20
주민등록증없이 살아온 한 평생, 이제는 아닙니다.	22
존엄사와 사전의료 의향서	24
소녀가장, 영구임대아파트를 승계받다.	26
한국인이 되고픈 두 아이의 엄마	28

“성년후견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제주사회복지신문 71호(2013년 9월호)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가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기존에 금치산제도, 한정치산제도가 민법상 정해져 있었으나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본인의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와 같은 제도의 활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반면,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바탕으로 재산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주체는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이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의 종류에는, ①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취소권을 가진 성년후견, ②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동의권·취소권을 갖게 되는 한정후견, ③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갖게 되는 특정후

견, ④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후견인의 권한을 인정하는 임의후견이 있다.

후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의료,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신상보호 등을 주요 사무로 하게 된다.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원은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당사자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 친척, 친구는 물론이고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계 분야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다수의 선임도 가능하다.

후견인을 선임했는데 만일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견인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후견감독인과 법원에서 한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후견인 임무수행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후견감독인은 법원에 후견인 변경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하여 불편 또는 어려움이 있는 이들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10년 전 산 불법건강보조식품 채무독촉 해결사례

제주사회복지신문 72호(2013년 10월호)

소멸시효제도와 내용증명우편을 알아보자!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은 현씨는 10여년 전에 도로변에서 어떤 건강식품 판매업자로부터 황토자라 제품을 약 20만원에 구입하였다. 이를 복용하였으나 건강에 좋다고 느끼기는커녕 설사와 복통이 발생해 전화로 항의하여 대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건강식품을 폐기하였다. 그 후 10여년이 지나 건강식품 구입 사실조차 잊게 되었을 무렵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어느 채권추심회사 법무관리팀으로부터 구입 가격의 5배가 넘는 금액인 128만원을 청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인한 형사 고발 및 강제집행 및 재산명시 신청, 신용 및 전산망 등 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형사고소예정통고라는 서류를 받게 되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걱정하던 현씨는 딸인 이씨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법률상담과 무료 법률상담을 하게 되었다.

법률상담자가 현씨의 딸인 이씨를 만나 전후 사정을 듣고 위 통고장 등을 검토한 결과, 위 채무는 판매업체와의 합의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물품대금에 대한 채무로서 단기소멸시효(3년)의 적용을 받아 이미 시효소멸하였으므로 현씨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었다. 그리고 현씨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7년) 만료로 형사 기소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게 되었다. 따라서 현씨와 이씨에게 위 사정을 설명하고, 소멸시효 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 사유인 ‘승인’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알려 주었다. 나아가 추심 독촉이 계속된다면 위 내용을 채권자 또는 추심업체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덧붙였다.

이와 같이 최근 채무가 없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면서도 무작정 채무자들에게 독촉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무리한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소멸시효제도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가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이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나, 상품의 판매대금(3년), 음식점의 음식료(1년) 등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입증하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이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발신자가 우편물에 쓴 내용을 증거 자료로 삼으려고 할 때 이용한다. 내용을 작성하여 동일한 문서 3부를 준비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로 보내게 되는데 보통우편의 경우보다 내용증명 수수료(장당 500~1000원)와 등기료가 추가된다.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을 분실한 경우에는 예전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우체국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할 수 있다.

채무를 상속받은 가정에 힘이 된 한정승인심판

제주사회복지신문 73호(2013년 11월호)

A씨(남, 25세)의 부모님은 A씨가 어릴 때 이혼하여 A씨는 부친과 떨어져 모친과 단둘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 그 후로 A씨는 부친과는 왕래없이 자라왔는데, 최근 부친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부친에게는 모아놓은 재산이 전혀 없고 오히려 수백만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부친의 빚은 사망과 동시에 A씨와 모친 앞으로 상속이 이루어져 채권자들은 집으로 우편물을 보내기 시작했다.

성실히 자라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A씨는 빚을 갚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여기저기 물어보며 알아보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던 중에 지역 신문 광고를 통해 법률홈닥터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었음을 알게 되어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법률홈닥터가 A씨와 면접 상담한 결과 당시는 부친이 사망한지 약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 법률홈닥터는 A씨에게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법원에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위 안내에 따라 A씨는 필요한 첨부서류들을 미리 발부받아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서 구조 요청하였고, 상담 후 무료 법률구조 결정까지 받게 되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에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법원에서 한정승인 인용결정을 받게 되었고, 채무

외에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A씨는 다시 한 번 법률홍닥터의 도움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림으로써 법적인 책임과 함께 마음의 무거운 짐도 벗어버릴 수 있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대신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한정승인은 민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바로 청구기간이다. 이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여야 하고 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유언에 대하여 알아보자

제주사회복지신문 74호(2013년 12월호)

유언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

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에 정한 바에 다른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방법으로 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언은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17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7세 이상이면 유언능력이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이 라 할지라도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효력을 갖는 유언의 내용

사망자가 생전에 남기고 싶은 뜻 중에서도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에서 인정된 일정한 것에 한합니다. 즉 재단법인의 설립, 친생부인, 인지, 미성년후견인 지정,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증, 신탁 등에 관한 것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서를 쓴 연월일 그리고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한번 서놓은 자필증서에 새로 글자를 더 써넣거나 뺄 경우 또는 고쳐 쓸 경우에도 유언자가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명은 반드시 자필로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인은 반드시 인장일 필요는 없고 지장, 즉 무인을 찍어도 됩니다. 이와 같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녹음기를 사용하여 유언의 취지, 자기의 성명, 그리고 유언을 하는 연월일을 말하여 녹음해야 합니다. 또한 그 녹음에 참여한 증인의 말로 그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의 성명도 녹음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성년 증인 두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해야 합니다. 우선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쓴 뒤에 증인 앞에서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모두 그 필기한 것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비밀증서로 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내용을 자기의 생전에는 비밀로 해 두고

싶은 경우에 좋은 방식으로 유언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유언의 내용을 쓰고 그 쓴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엄봉날인한 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봉서의 표면에 유언서의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작성한 유언봉서를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에 의해 다른 방법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식은 성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중 한 사람에게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해 주면 그 사람이 이를 받아쓴 뒤 낭독하여 유언자와 나머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유언서는 유언 당시 참여한 증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심경의 변화가 생겼거나 혹은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본인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도내 사회복지 **인권향상**을 위해 **법률 홈닥터**가 달려가겠습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 · 사회복지종사자 · 기초수급자 · 다문화가족 ·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1.인권상담 2.소송 절차 안내 3.법률구조기관 등 연계 4.법문화 출장 교육 등

신청 방법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상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법률홈닥터에서 신청
 ▶ 전화상담 :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064)702-3782

전과기록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제주사회복지신문 75호(2014년 1월호)

전과기록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 되어 벌금 5만원에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될 경우 전과기록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인데 과거 이러한 전과기록을 일명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표현하여 한 사람을 낙인찍는 용도로 사용하곤 하였다. 그런데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전과기록에 남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전과기록에 남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위와 같이 즉결심판절차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기재되지 않는다. 전과기록에 관하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법 제2조 제7호에서는,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법 제2조 제2호, 제3호)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벌금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범죄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를 전제로 하는데(법 제2조 제5호) 즉결심판 대상자의 경우 수사자료표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므로(법 제5조 제1항 제1호), 즉결심판절차에서 벌금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결국 위 사례에서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벌금 5만원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뿐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게 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있나요?”

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구수는 전체가구수의 45%(2012년 기준, 국토교통부)에 이르고 있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국민의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통용되고 있던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및 지급일자, 임대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제공과 분쟁방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 등이 꼭 알아야 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각종 임차인 보호규정을 담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지난 7월 보도자료와 함께 이를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경매·공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보다 선순위로 배당되는 ‘미납국세’와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을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에 포함시켰다.

둘째, 임대차기간 중 발생하는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셋째,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 - 뉴스 - 보도자료 - 2298번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안전행정부·지자체 등의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국민들이 표준계약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없이 살아온 한 평생, 이제는 아닙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76호(2014년 2월호)

“무호적자로 살아온 한평생, 너무 힘들었습니다.”

A씨(남, 80대)는 평생을 무호적자로 살아왔다. 젊은 시절에는 꼭 호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적극적으로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지 않았고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무호적자 상태로 살아왔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어느덧 80세가 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뇌경색이 발병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도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배우자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어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었다.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을 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나날만 계속되었다. A씨의 사정을 알게 된 구청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법률상담자가 A씨를 만나게 되었다.

성분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신청하다.

법률홈닥터는 사례관리 담당자와 만나 A씨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후 직접 가정방문을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례관리 담당자와 동행하여 가정을 방문한 법률홈닥터는 병환으로 몸져누워있는 A씨와 대화를 나눠야 하지만, 다행히 A씨가 연세에 비하여 의식이 또렷하고 의사전달이 명확하였던 관계로 A씨의 지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법률홈닥터는 주민등록증이 없이 살아온 세월의 어려움을 차근차근 들었으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A씨와 앞으로의 절차를 걱정하는 배우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법률홈닥터와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 A씨는 밖으로 꺼내기 힘들어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법률홈닥터는 왜 여태까지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A씨에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기를 부탁했다. 법률홈닥터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례관리 담당자와 함께 성장환경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성분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심판 절차를 진행하였다.

“법률홈닥터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안심이 됩니다.”

A씨는 그동안 주민등록을 만들고 싶어 이곳저곳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았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경험을 말하면서, 법률홈닥터가 직접 와서 설명해주니 안심이 된다며 너무나 고마워하였다.

존엄사와 사전의료 의향서

제주사회복지신문 77호(2014년 3월호)

올해로 칠순을 맞이한 A씨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많지는 않지만 칠십 평생 모아놓은 돈을 평소 이용하던 복지관에 기부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건강한 죽음을 맞이 위해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던 A씨는 얼마 전 친구의 병문안을 다녀오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말기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A씨의 친구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깨어날 가망도 없는 상태였는데 가족들의 요청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고통스러운 생존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자신이 친구처럼 살아날 가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인공호흡기와 같은 기계적인 장치에 의존해 살기보다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만 이러한 자신의 의사를 남길 절차나 방법을 알지 못한다.

A씨와 같이 이른바 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 ‘사전의료 의향서’이다. 2009년 대법원이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에서 김할머니의 존엄사를 위해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구하는 가족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이러한 의향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사전의료 의향서란, 죽음에 임박하여 자기에게 제공될 치료의 종류나

방법에 대해 직접 알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사용하도록 의식이 명료한 상황에서 작성해두는 서식을 말하는데,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치료를 거부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다. 사전 의료의향서가 필요한 이유로는 일단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면 현대 의학은 뇌사 상태라 할지라도 인공호흡, 심폐소생 등 연명치료를 하게 되는데 환자의 보호자가 더 이상 단독으로 연명치료중단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경우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를 누구도 행사할 수 없으며, 연명치료의 병원비용이 보호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위 의향서는 자신의 담당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작성하게 되고 언제라도 내용을 바꾸거나 폐기할 수 있다. 서면 양식은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홈페이지(sasilmo.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천모임에서는 의향서의 작성 및 보관도 돕고 있다.

사전의료 의향서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경우, 위 실천모임 홈페이지나 사무실(02-2281-2670)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다.



소녀가장, 영구임대아파트를 승계받다.

제주사회복지신문 78호(2014년 4월호)

후견인 선임절차를 도와 영구임대아파트를 승계받도록 한 사건

A양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2011년 봄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2012년 여름에는 아버지마저 사망하여 혼자 가 되었다.

장례를 마친 후 영구임대아파트를 승계받으려는 A양에게 아파트관리 사무소에서는 A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를 받아서 오라고 했다. A양은 고모를 특별대리인으로 하고 싶었지만 그 선임결정을 받는 방법을 몰라 헤매던 중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법률홈닥터와 만나게 되었다.

법률홈닥터는 상담을 통해 친권자와 미성년의 자 간에 이해상반행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사안이 아니라 후견인을 선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승계를 대리해야 할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법률홈닥터는 직접 A양과 함께 누가 A양의 후견인인지 찾아나섰다.

현행법상 미성년후견인은 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선임후견인의 순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먼저 A양의 지정후견인은 없었으므로 법률홈닥터는 제적등본과 진술을 통해 그 다음 후견인인 법정후견인을 찾아나갔다.

법정후견인의 순위는 양가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동순위자가 수인일 경우 최고 연장자가 후견인이 되는데, 조부모, 외조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양가 3촌들 중에서는 외삼촌이 가장 연장자임을

확인한 법률홈닥터는 외삼촌이 이미 A양의 법정후견인으로 되었다고 안내하였다.

법률홈닥터는 실질적으로 A양의 후견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후견인 변경도 검토하였지만, A양이 곧 성인이 되므로 후견인이 필요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그때까지 위 아파트의 승계 문제 외에 후견인이 A양의 법률행위를 대리해줘야 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후견인을 변경하는 법원의 절차를 거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영구임대아파트 승계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A양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먼저 외삼촌에게 영구임대아파트 승계 대리를 부탁해보고 거절시 후견인 변경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론내렸다.

법률홈닥터는 A양에게 외삼촌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구청에 가서 후견개시신고를 하고 관리사무소에 모시고 가서 승계절차를 밟을 것을 안내하였으며 관리사무소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특별대리인은 임대차 계약명의자가 사망했고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 자녀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결국 A양은 법률홈닥터와 상담한 대로 외삼촌에게 연락하여 후견개시 신고를 하고 함께 관리사무소에 가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승계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인이 되고픈 두 아이의 엄마

제주사회복지신문 79호(2014년 5월호)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의 귀화를 도운 사례

베트남 이주여성 S씨(여)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남편 L씨와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한지 4년이 다되어가는 이주여성이다. S씨는 L씨와의 사이에 1남 1녀(여, 3세/남, 1세)를 낳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다. 남편인 L씨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주여성 배우자 교육프로그램도 꾸준히 이수하는 등 화목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S씨는 아직 귀화를 하지 못한 상태이며 L씨 역시 부인이 귀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L씨는 본인의 마음과 달리 귀화절차에 관한 서류나 절차에 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없어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법률홈닥터에게 귀화절차에 대하여 조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률홈닥터는 직접 L씨와 S씨를 만나 귀화에 필요한 서류(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여권사본, 증명사진, 가족사진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것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L씨에게 어머니 명의의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준비하게 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측에는 통보서와 베트남 국적 신분증 번역서 및 번역에

해한 확인서를 준비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법률홈닥터는 L씨와 S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만나 신원진술서 및 귀화허가신청서를 함께 작성하고 국적계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L씨 어머니 소유의 주택만으로는 재정 상황을 증명하기는 어려워 이로 인해 귀화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만약 L씨가 농사를 짓는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

법률홈닥터는 L씨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하여 조합으로부터 재직증명서와 같은 종류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었고, 결국 위 서류는 며칠 후 L씨가 우편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면접절차만 통과하면 귀화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설명해 주었고, 법률홈닥터는 귀화면접 절차에 관해 직접 설명해 주었다.

그 후 5개월 후 귀화허가서를 받았으며, 법률홈닥터는 S씨가 성분 창설과 개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양영화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2014. 6 ~ 2014. 12)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그 대처 방법!	32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도록 도운 사례	32
가정폭력 피해자 A씨를 도운 사례	36
오해하기 쉬운 법률상식	38
채무조정제도	40
배상명령신청관련 사례	42
두 자매의 네버엔딩 스토리... 해피엔딩을 위한 손길!	44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그 대처 방법!

제주사회복지신문 80호(2014년 6월호)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신청을 도와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임차인으로서 기초수급금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임대차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뜻밖에 집주인은 ‘새 임차인을 구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B씨가 힘든 사정을 설명하며 애원했지만 집주인은 그건 B씨 사정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어쩔 수 없이 일단 대출을 받아 임대주택 입주 보증금을 납부한 B씨는 걱정만 하였고,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구청 사례관리 담당자는 법률홈닥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구청 사례관리를 통해 B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법률홈닥터는 B씨와의 상담에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상황이 열악해서 하루라도 빨리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B씨에게,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는 이사를 가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됨을 알려주었고,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게 바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B씨는 법률홈닥터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법원을 방문하였고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결국 며칠 후 집주인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B씨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아래 서류들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자유롭게 주거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아래와 같이 준비하면 된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도록 도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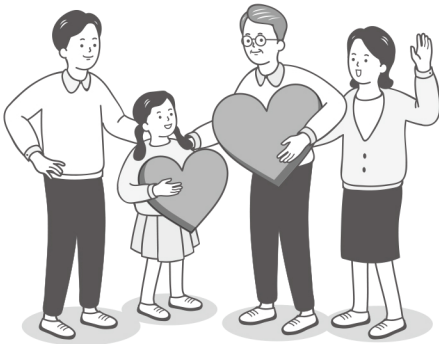
제주사회복지신문 81호(2014년 7월호)

A씨(여)는 아이의 아빠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이별을 하게 되었고,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A씨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을 꿈꾸었지만, 친부의 성을 따르고 있던 아이가 A씨 남편의 성과 다르다는 것을 학교에서 친구들이 알게 되었고,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다. 이웃, 친척들까지 A씨의 남편과 아이의 관계에 대해 수군대면서 A씨 가족의 불화가 깊어져만 갔다. 고심하던 A씨는 시청 희망복지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터를 만나게 되었다.

법률상담터는 A씨와 법률상담을 통해 아이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받고 있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성변경 절차를 진행하였다. 법률상담터는 A씨가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고 작성하는 것을 돕고, 성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가정법원에 접수하기까지 지원하였고, 얼마 후 법원에서 성변경 결정이 내려졌다.

성변경제도란?

2008. 1. 1.부터 시행된 제도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기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도내 사회복지 **인권향상**을 위해
법률 홈닥터가 달려가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A씨를 도운 사례

제주사회복지신문 82호(2014년 8월호)

A씨는 17년 동안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계속되는 의처증, 폭력에 시달리며 고통 받고 살고 있었다. 남편은 수시로 지갑과 신분증을 빼앗고, 핸드폰 검사를 하였다. 한 달에 술값이 300만원 이상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술을 먹으면 폭력을 행사하였다. 상담 당시 A씨의 온몸에는 멍이 들어있었다. A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였고, 한국가정법률사무소의 연계를 통하여 이혼 절차 등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법률홈닥터를 만나게 되었다.

법률홈닥터는 A씨에게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서 확인한 가정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접수 증명서 등을 첨부한다면 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사무소에서 가사소송에 관한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 주었다.

A씨의 경우 남편이 협의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임을 밝히고,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폭행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을 알렸다. 우선, 상해 진단서 등 가정폭력피해사실확인서와 기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으로 안내하였다. 그리고 양육권과 친권을 A씨가 가지는 것으로 진행하되, 향후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예상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혼소송과

동시에 양육비 청구 등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A씨가 무료로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 학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및 아동구결 강요 등이 있다.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뿐만 아니라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된다.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혼을 통한 해결과 가정폭력 가해자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가해자를 고소하려면, 고소장에 그동안의 폭력행위를 자세하게 쓰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나 치료사실확인원, 상처부위에 관한 사진들, 이웃 등 목격자들의 확인서, 폭력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 녹음, 진술 등이 필요하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이 중 협의상 이혼이란 당사자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는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요구해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러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40조).

오해하기 쉬운 법률상식

제주사회복지신문 83호(2014년 9월호)

오해하기 쉬운 법률상식 내용을 되짚어보며 바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나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사유가 될 뿐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고죄(간통죄, 모욕죄 등)와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에 한해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최근 개정 형법에서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소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채업자의 협박·폭행을 처벌할 수 있나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행, 협박, 정당한 사유 없는 야간방문 등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로부터 불법적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증인을 확보해 두거나 전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가출 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

종종 다른 이성과 혼인을 하려해도 예전의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거주지도 모르고 생사도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항간에는 6개월 동안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잘못된 법률상식이 있으나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배우자의 가출만으로는 저절로 이혼이 되지 않으며, 부부가 협의하거나(협의이혼),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만(재판상 이혼) 비로소 이혼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송달 등의 문제로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재판상이혼을 진행한 뒤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 주었다면 변제받을 수 없나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대여사실을 입증한다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통장입금 혹은 계좌이체의 방법을 통해 돈을 빌려주었다면 거래명세서나 통장 내역으로 돈이 건네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대여조건을 명시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제주사회복지신문 84호(2014년 10월호)

채무를 조정하여 신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과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떠한 제도를 이용할까요?

김○○씨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밤낮없이 채권자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벌고 있는 수입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김○○씨는 어떠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현재 보유한 재산만으로 청산절차를 거친 후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한 뒤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연체이자 및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감면을 받으면서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 상환을 함으로써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고,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신고안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보증인, 친족, 함께 근무하는 자 등)에게 알려 부담을 주는 행위, 심야 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채권추심을 받는 채무자는 증거수집(문자 내용 보관, 음성통화내용 녹음 등)을 하여 금융감독원(1332)나 경찰(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문의할 수 있고,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관련 사례

제주사회복지신문 85호(2014년 11월호)

양육비를 부담하던 남편이 살해당해 생계가 곤란해진 기초수급 가정

“이혼한 전 남편이 살해를 당했어요. 지금 막 발인을 마치고 오는 길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씨(여)는 법률홈닥터의 상담을 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 구조에 연계되어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 남편이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회사의 사업 자금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A씨는 남겨진 아이들을 위하여 당장 장례식 이후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전 남편이 지급하는 양육비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자녀들의 양육과 생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막막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고자 이전에 도움을 받았던 법률홈닥터에게 긴급히 연락을 하였다.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배상명령제도를 알게 되다

당시 A씨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하고 있었으므로, 법률홈닥터는 우선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범죄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보실 것을 권유하는 한편, 배상명령 신청을 위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이후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A씨는 황망한 사고 앞에 당장 생계를 염려해야

하는 답답한 현실에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안도할 수 있었다.

배상명령제도란?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 **서면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분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 **구술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서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 **배상명령신청의 제한**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아래와 같이 준비하면 된다.

-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분
- 피해액을 입증할 서류

두 자매의 네버엔딩 스토리… 해피엔딩을 위한 손길!

제주사회복지신문 86호(2014년 12월호)

성폭행 피해로 물든 자매를 구원한 변호사들

“가족이 무엇일까요? 왜 가족은 저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만 하는 거죠?”

A씨는 이제 갓 성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의붓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였고 아이까지 출산한 상태이다. 친아버지의 가정폭력을 피해 찾아온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그녀는 참기만 했다. 동생들에게만은 가족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붓아버지가 A씨의 여동생들까지 강제추행하기에 이르면서, 결국 그녀는 의붓아버지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법률홈닥터와 함께 그들의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찾다.

법률홈닥터는 A씨를 만나 가녀린 그녀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지난 이야기를 듣고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후 법률홈닥터는 법률적인 지원뿐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청 관계자와 협력하여 그녀의 체납된 월세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열악한 생활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그녀를 위해 병원비를 지원하고 음식을 조달하였을 뿐 아니라, A씨와 여동생이 검정고시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하였다.

법률홈닥터는 A씨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연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 재판 절차를 설명하고, 법정 참관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12년 구형, 전

자발찌 착용,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고, 가해자는 상고를 하였지만 상고가 기각되며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성폭력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을 지원한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이다. 성폭력상당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 단계부터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어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필요적 수사개시 보고대상 사건이므로 해당 사건 발생 시 성폭력 전담검사에게 보고되고, 국선변호사의 선정도 이때 이루어진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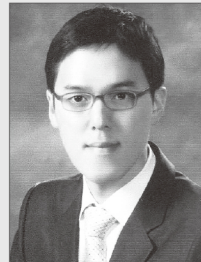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성폭력 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국번 없이 1301) -경찰청(국번 없이 112)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1899-3075)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2015. 2 ~)

행복을 지켜라! 행복지킴이 통장	48	업무방해죄란?	78
가족의 채무도 갚아야 할까요?	50	도장이 빠진 유언장	80
초상권	52	민사조정제도	82
아동학대 신고의무	54	채권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84
새로운 사회보장급여 제도	56	공소시효 제도	86
협약이혼시 의무 상담제도	57	세탁기에서 돈을 꺼내간 범인들	88
지급명령이란?	58	업무상 주의의무	90
금연구역	59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92
개인정보보호 I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60	채무에서 벗어난 소송구조 사례	94
개인정보보호 II -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61	소년 가정의 상속관련 문제	96
소송구조제도 I - 대한법률구조공단	62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인생	98
소송구조제도 II - 취약계층이 비용부담 없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100
소송을 해야 한다면?	64	통장에서 사라진 기초생활수급비	102
물래 녹음하면 처벌을 받을까?	66	이자의 최고 한도는?	104
자식 없이 돌아가신 어르신 재산 어떻게 될까?	68	억울한 처벌 위기에 놓인 기초생활수급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70	대상자에게 도움을 준 사례	106
가정폭력 가해자는 무조건 범죄자로 처벌될까?	72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	
알미운 사위가 유일한 상속인?	74	대상자가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76	도움을 준 사례	108

행복을 지켜라! 행복지킴이 통장

제주사회복지신문 88호(2015년 2월호)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된 A씨(남, 50대)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노숙인으로 살아오다가 작년부터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지난 아픔을 잊고 마음을 잡아가다 보니 주변에서 많은 도움도 주고 다시 일어설 희망이 보이는 것도 같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게 되면서 본인 이름으로 통장도 만들고 다시금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뻐다.

그러던 어느 날 약간의 돈을 찾아 쓸 일이 있어 은행에 갔던 A씨는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어 예금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오래전 채무에 대해 채권자들이 재판을 거쳐 A씨 명의의 통장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 놓은 것이었다.

A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정부로부터 받는 수급금은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에 이 금원이 입금된 통장은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직접 청구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압류 해제를 통해 당장 급한 불을 끈 경우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압류방지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이다.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한 후 기초생활수급비의 수령계좌를 이 계좌로 변경하면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에도 A씨 명의의 이 통장

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여 A씨는 수급비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가 불가능한 전용통장의 이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급여통장이 다른 금원과 뒤섞이게 되어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현재 기초연금, 장애인급여, 한부모가족 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되고 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각 은행별로 ‘은행명’ + ‘행복지킴이통장’식으로 표시되는데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전용통장’ 문구로 확인하면 된다.

이 통장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하고 은행이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제한된다. 출금에는 제한이 없으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등 일체행위가 제한되고 타인으로의 양도, 타인에게서 양수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행복지킴이 통장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은행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가족의 채무도 갚아야 할까요?

제주사회복지신문 89호(2015년 3월호)

B씨에게는 중증장애인인 중년의 딸이 하나 있다.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던 딸이 얼마전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딸의 소식을 기다리던 중, B씨는 한 장의 통지서를 받았다.

딸이 고가의 휴대전화를 구입해 사용하였고, 통신요금과 기기대금이 미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B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후에도 딸의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폰이 개통되었다며 그에 대한 미납요금을 청구하는 독촉장을 끊임없이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출금 상환에 대한 독촉장, 신용카드 연체 대금에 대한 통지서가 집으로 오자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다.

누군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딸을 속여 그녀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되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본인 명의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어 밤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과연 딸의 채무에 대해 가족인 B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B씨는 원칙적으로 딸 명의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사용요금, 대출금과 신용카드 연체 금액에 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가족관계에 있을지라도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통신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의 채권자가 딸이 아닌 B씨에게 독촉을 반복하거나 B씨의 재산에 대해 법적절차를 진행한다고 고지하는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초상권

제주사회복지신문 91호(2015년 5월호)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려 추억으로 남기는 일은 무척 즐거운 일상이다. 이럴 때 어떤 친구들은 가끔 “너 왜 내 사진 올렸어? 내 초상권 침해하고 있으니깐 조심해”라며 농담을 던지는데 경우에 따라 초상권 문제로 심각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시내 한 복판 변화가에 뉴스 카메라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찍고 있었는데 무심코 지나친 다음 날 부정적인 기사의 자료 화면으로 내 얼굴이 TV 뉴스에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초상권’이 문제되는 사안이다. 초상권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살펴보자면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데 여기서 ‘초상’이란 ‘사진, 그림 따위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말한다. 우리는 누구나 초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초상권의 의미

법적인 의미에서 초상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초상권을 구체적으로 다룬 규정은 없고 판례가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가 보호하는 초상권의 내용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인데 쉽게 말해 찍히지 않을 권리, 공개되지 않을 권리,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모두 초상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 어떤 구제수단이 있는가

초상권 침해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없고, 자기의 초상이 사전 승낙 없이 전시되거나 게재되었을 경우, 또는 승낙된 범위를 넘어서 사용된 경우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드라마에 삽입된 음악회 연주 장면에서 연주자의 얼굴이 노출된 경우, TV고발 프로그램에서 익명 처리를 약속했지만 모자이크가 약해 제보자가 누구인지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방송국 내부 시사회용 사용을 조건으로 촬영을 승낙했으나 부정적인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방영된 경우 등이 후자의 예가 된다.

누군가 내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나의 동의 없이 그의 미니홈피에 올리거나 보도 자료로 사용했을 때에는 우선 삭제를 요청하고 그럼에도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주사회복지신문 93호(2015년 7월호)

2014년 초 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었다. 친모가 아이를 맡긴 채 보육료도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5개월간 그의 아이를 보육해 오면서 담당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이유였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을 말한다. 이 때의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자로 고등학생도 포함될 수 있는데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뿐 만 아니라 아동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일, 안전한 위생관리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모두 학대 행위가 될 수 있다.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특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위의 사례처럼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의무 대상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2항)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담당 공무원, 교원, 의료인 등 아동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며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신고 전화번호는 기존 1577-1391에서 112로 통합되었으며, 기존 번호는 2015. 6. 30.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회복지 **인권** 사랑방 운영]

우리 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 사회복지현장 근무자의 인권옹호를 위한 '사회복지 인권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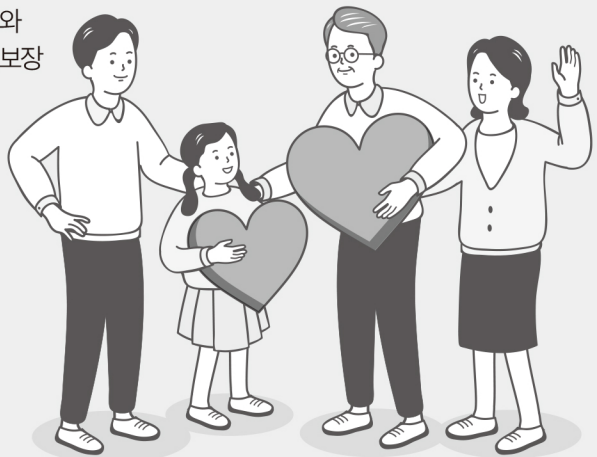
운영내용

- 사회복지현장 인권침해사례 발굴 및 접수·상담, 법률지원
- 인권관련 교육 : 시설 이용자 및 근무자 인권교육, 인권강사 양성교육 등
- 사회복지현장 인권침해 관련 국내외 사례 수집 및 전파
- 사회복지현장 인권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포상 추천

이용방법

- 상담콜 또는 전용 E-mail을 이용한 초기상담 이후 지원방법이 안내됩니다.
 - 상담콜 : T. 702-3782(변호사 또는 담당직원이 응대)
 - 전용 E-mail : tohic@naver.com(변호사만 확인 가능)

※ 상담 의뢰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
됩니다.



새로운 사회보장급여 제도

제주사회복지신문 94호(2015년 8월호)

지난 7월 1일 새로운 사회보장급여 제도가 시행됐다. 법과 제도가 국민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겠지만 새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해 통합형 제도에서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들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새로운 제도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으로 표현되며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가장 큰 특징은 지원하는 항목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세분화하여 필요에 맞는 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부양의무자의 존재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함에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가 신설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판단 기준을 명시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적거나 군입대, 해외이주, 교도소 수감 등 사유가 있을 경우와 부양 기피 혹은 거부 의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이전에 부양의무자 기준의 벽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새로운 기준에 따른 급여 가능성을 타진해 보길 바란다. 아울러 각 급여에 대한 문의는 복건복지콜센터 129(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를 이용하면 된다

협의이혼시 의무 상담제도

제주사회복지신문 95호(2015년 9월호)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제주는 전국적으로 이혼율이 높은 지역이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매해 거의 2,000여 쌍이 이혼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 당사자들에게겐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부부의 이혼으로 사회 전체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늘어난다.

무작정 이혼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겠으나 사소한 문제 또는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이혼을 막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 우리 민법은 협의 이혼의 경우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뒤 부부가 이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있는데, 당사자들에게 이 기간이 그저 이혼의 걸림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부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되는 협의 이혼 사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의무적으로 상담 절차를 거쳐야만 협의 이혼이 진행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협의 이혼 신청 시 상담기관 및 상담일정을 정하여 부부가 함께 해당기관을 방문하고 1~5회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상담을 진행하는 기관은 부부 및 가정문제 전문 상담 기관인 제주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사랑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부설 희망상담소,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이며 비용은 제주지방법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지금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의무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는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명령이란?

제주사회복지신문 96호(2015년 10월호)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불안감에 빠지게 되는데 내용 자체도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중 ‘지급명령’은 이름 자체도 명령이 들어가 있어 마치 법원에서 나에게 무언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듯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촉절차로서 소송, 조정과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이다. 채권자는 정식 소송에 비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도록 방어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리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소송에 비해 인지대(10분의 1)와 송달료가 저렴하다. 통상의 소송이 적어도 수개월이 걸리는데 비해 지급명령은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에게는 2주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권자는 정식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소송을 거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라면 소송 전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봐도 좋을 것이고, 채무자라면 지급명령을 받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24

금연구역

제주사회복지신문 97호(2015년 11월호)

담배를 피우고 싶은 흡연자들의 자유와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비흡연자들의 권리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법(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을 정하여 위반시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일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직접 금연구역으로 정한 곳은 도청, 시청, 정부청사, 법원 등을 비롯하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공항이나 여객부두의 대합실 및 승강장,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PC방 등이다(법 제9조 제4항 참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도 금연구역에 해당하여 거의 대부분의 실내가 금연구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법에서는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금연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도에서는 두 차례의 금연구역 지정 고시가 있었다. 2014년도 고시(138호)에서는 버스정류소(비가림 버스 승차대 1,500여개)와 공원 및 관광지를 금연구역으로 정하였다. 여기에는 공원, 휴양림, 미술관, 박물관, 폭포 등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38곳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8월 24일에는 금연구역 추가지정이 있었는데 도내 8곳의 비가림 택시 승차대가 금연구역이 되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연구역이라는 표지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다. 아울러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상 쓰레기 등 투기에 해당하여 적발시 범칙금을 내야한다.

개인정보보호 I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제주사회복지신문 98호(2015년 12월호)

주민등록번호는 행정, 금융, 의료,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식별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이다.

경우에 따라 이름은 바꿀 수 있지만 한번 부여된 주민번호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변경이 불가능하다. 모든 국민 개개인을 13자리 숫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큰 피해와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그 핵심이 되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듯 하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한을 말한다. 예외적으로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허용했거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경품행사에 응모하거나 인터넷사이트의 회원가입 등 지금까지 특별한 생각 없이 자신의 주민번호를 제공했던 경우들이 모두 위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주민번호 제공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또한 업무상 주민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에도 수집 업무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주

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나 개인정보보호관련 정보는 국번없이 118번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로 문의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Ⅱ -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제주사회복지신문 99호(2016년 1월호)

지난 호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해 알아보겠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금융상품, 이동통신 등에 가입할 경우 개인정보 관련 사항에 동의를 요구받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sciously 읽어들이지 못하고 동의표시를 하게 되는데 깨알같이 적혀 있는 내용들에는 다양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⑤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반드시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정보의 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 그 법정대리인(보통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내용의 고지가 없거나 미성년자에게 직접 받은 동의는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게 된다.

유효한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광고성 문자나 스팸메일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민·형사상의 법률문제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개인정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국번없이 118)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or.kr)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송구조제도 I -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사회복지신문 101호(2016년 3월호)

우리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누구나 필요에 따라 재판을 통하여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판에 쉽게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법률전문가를 찾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개인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률복지 증진 이바지 목적

「법률구조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법률구조사업 수행

공단은 국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해서는 소송의 수행까지도 무료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는 임금채불근로자, 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업인, 소상공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이며 초기 상담 이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무료구조여부가 결정된다.

유료소송도 시중보다 저렴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의 경우에는 소장이나 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하여 주기도 하여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료소송구조의 경우에도 공단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시중의 일반 변호사비용에 비해 저렴한 금액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987년에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의 법원, 검찰청 소재지마다 지부와 출장소·지소가 있는데 제주지역에는 제주지부(법원 근처)와 서귀포지소(서귀포시청 內)가 설치되어 있다. 공단 이용을 위해서는 공단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거나 국번없이 132번에 의한 전화 법률상담,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를 통한 사이버 법률상담 등을 활용하면 된다.



소송구조제도Ⅱ -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해야 한다면?

제주사회복지신문 102호(2016년 4월호)

지난 호에 이어 인권 옹호를 위한 소송구조제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법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언여비, 감정료 등이 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고액의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을 때 법원을 통해 비용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사람에게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무자력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해야 함을 말한다.

무자력과 승소가능성 필요

소송구조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

우라면 법원에 신청하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송구조결정이 바로 변호사의 선임의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비용 지원을 통해 변호사 선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난 호에서 설명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도 수월해 진다. 그러나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법원이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재판의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다.



몰래 녹음하면 처벌을 받을까?

제주사회복지신문 103호(2016년 5월호)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대화나 통화를 손쉽게 녹음할 수 있게 되었고 녹음에 대한 법률적 궁금점을 문의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법적인 분쟁 과정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 녹취록은 강력한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과연 허락 없이 녹음을 하고 이를 사용해도 괜찮을까?

우리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17조 역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통신과 사생활 영역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하며 위반시에 무거운 처벌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몰래하는 녹음은 불법이 된다.

모든 녹음이 불법은 아냐

그런데 몰래한 녹음이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과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함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녹음버튼을 눌러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을 규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녹음시 사실 고지 필요

이는 전화 통화 만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화 상대방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을 하더라도 본인이 대화 참가자인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녹음들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몰래하는 녹음이 적법하고 무조건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몰래하는 녹음 자체를 처벌하고 있고, 우리 법원도 최근 판결에서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명한 바 있다.

가급적 녹음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자식 없이 돌아가신 어르신 재산 어떻게 될까?

제주사회복지신문 104호(2016년 6월호)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자주 보게 된다. 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길 바라지만 시간이 흘러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가시게 될텐데 많은 적든 세상에 남기는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

민법 상 상속은 4촌까지

우리 민법상 상속은 4촌까지 가능하다. 배우자나 자식이 아니더라도 형제 자매나 삼촌, 사촌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평생 한 번도 와보지 않던 친척이라도 갑자기 나타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말인데 문제는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이다.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 가족관계등록부나 과거 호적 관련 서류의 열람이 까다로워지면서 배우자나 자식 외의 상속인은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살던 집이나 땅 등의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등 액수가 적지 않은 사례도 있다.

민법은 이 경우를 위해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 상속인의 부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고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있으나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절차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 1년 정도 상속인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가 법원에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달라고 청구하며 그래도 남는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한다. 그러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나타나도 청구하지 못한다.

특별연고자 상속할 수 있어

특별연고자란 돌아가신 분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의미하는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양로원이나 병원 등의 단체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럼 상속인이 없을 경우 돌아가시기 전 간호를 한 사람은 재산을 전부 가질 수 있는가? 특별연고자가 재산분여청구를 하면 법원은 특별연고자의 종류, 성별, 직업, 연령, 상속 잔여재산의 종류, 액수, 내용 등과 특별연고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분여한다는 심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

본인이 남길 재산을 뜻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에게 미리 법적 조치를 권유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제주사회복지신문 106호(2016년 8월호)

양질의 직장을 판단하는 근거로 흔히 '4대 보험'이 되는지를 따져본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 사회보험을 말하는데 앞의 3가지 보험은 근로자도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산재보험은 다소 생소한 면이 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중요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평소 보험료를 납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이 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

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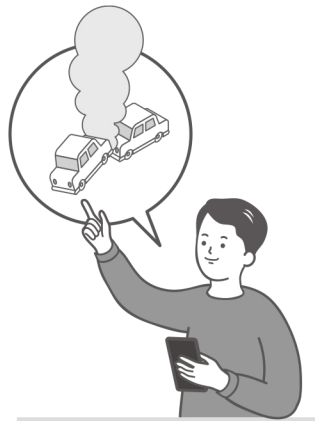
출·퇴근 사고 보상 어려워

따라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산재보상을 받기가 힘들다.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의 사고도 문제가 되는데, 근로자가 해당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가 된다.

최근 대법원은 한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다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받으려면 일상적인 업무강도와 스트레스를 넘는 수준에 달해야 하는데 한달 정도의 휴무 없는 근무라도 저녁 8시 이전 퇴근이라면 업무강도가 세지 않아 일상적인 업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무조건 범죄자로 처벌될까?

제주사회복지신문 107호(2016년 9월호)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이다. 가정폭력은 매우 심각하고 무서운 범죄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가해자 역시 합당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가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 법에서는 ‘가정보호’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하루 10건 경찰에 도움 요청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실혼관계나 양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다루어지는데, 지난 2015년 한 해동안 제주지역에서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사건은 3300여 건으로 하루 10건 꼴로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신고된 사건 중 입건된 가해자는 803명이지만 이중 형사 처벌된 사람은 324명이고 나머지 479명은 가정보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절반 이상은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특별한 처분을 받은 것이다.

가정보호재판은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를 단순히 처벌만 할 경우 가정의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부인을 때린 남편에게 벌

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치료, 상담소의 상담을 받을 것을 명하는 동시에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폭력의 재발을 막고 온전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보면 된다.

8가지로 구분되는 ‘가정보호’

가정보호재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나 경미한 폭행일 경우 수사기관이나 형사법원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고, 담당 법원은 심리를 거쳐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과하는데, 보호처분은 8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8가지 보호처분은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의 접근금지, 전화나 휴대폰 등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통신금지, 친권자의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 의료기관의 치료, 상담소의 상담이 있다.

가정보호재판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정폭력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폭력이 일어난 경우에는 즉시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얕미운 사위가 유일한 상속인?

제주사회복지신문 108호(2016년 10월호)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냐며 너무 억울하다는 A씨의 사연을 들어보자.

젊어서 부인과 사별한 A씨는 남들에게 구두쇠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평생 아끼고 아껴 큰 재산을 모았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외동딸을 키우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딸 B는 잘 자라주었고 좋은 직장에 남부럽지 않게 결혼도 하여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남편 C와 성격차이가 있던 딸 B는 잦은 부부싸움 끝에 별거를 시작했고 그러던 중 말기 암이 발견되어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다. A씨는 딸의 회복을 위해 많은 돈을 써서 치료를 시도했지만 A씨의 사위이자 B의 남편이었던 C는 병원비는커녕 병문안 한번 오질 않았다. 안타깝게도 B는 곧 세상을 떠났고 보험금, 퇴직금을 비롯한 많은 재산을 남겼다.

내 맘 같지 않은 '법정상속분'

A씨는 딸을 잃은 슬픔도 너무 컸지만 그보다 사위 C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딸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C는 자기가 망인의 배우자라면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자식이 없이 사망한 B의 경우 직계존속인 A와 배우자인 C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C가 A보다 50%를 더 많이 상속받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의 법정 상속분이다. 따라서 B가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 등 재산에 대해 C의 몫이 인정된다.

민법이 말하는 ‘대습상속’

그런데 A씨를 괴롭게 하는 점이 더 있다. 바로 A씨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다른 아님 사위 C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은 민법의 ‘대습상속’ 때문에 일어난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1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외동딸인 B가 먼저 사망하고 나중에 A씨가 사망하면 사위인 C가 법에 따라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대습상속 규정은 상속인이 가지는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런 경우의 사위까지 보호하는 법이 A씨에게는 너무 가혹한 면이 있다.

위 상황에서 C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면 A씨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

제주사회복지신문 109호(2016년 11월호)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모습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면만 놓고 보아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 재판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배심원’이었다. 배심원이란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판결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국민참여재판’이란 이름으로 배심원 제도가 점차 확대되었고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하여 우리에게 친숙한 제도가 되었다.

배심원의 역할과 한계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이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미국의 제도와 큰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과 재판부(판사)가 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평결할 수 있다. 배심원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배심원 선정과정

모든 형사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대상 사건 중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여 신청하고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배심원은 소수의 부적격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되는데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 절차를 거친다. 배심원이 되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약간의 수당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 사법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한자기 조심할 사항은 최근 배심원 선정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것인데, 법원에서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전화, ARS 등으로 개인 정보를 묻거나 과태료 부과, 계좌 납부 등의 안내를 하지 않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업무방해죄란?

제주사회복지신문 110호(2016년 12월호)

우리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를 범죄로 정하여 행위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인데 여기의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 불만이 생겨서 담당자나 사무실을 찾아 항의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때로는 정도가 지나쳐서 업무방해로 처벌이 되는 사례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난다.

업무방해의 사례

병원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문제 혹은 부작용이 생긴 경우 병원을 찾아 항의를 하는데, 가족들이 교대로 항의 내용이 적힌 피켓만을

들고 건물 출입구의 한 쪽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병원 상담실과 대기실에 여러 명이 몰려 가서 합의를 하자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켓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업무방해에서의 ‘위력’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업무방해에서의 ‘위력’은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업무의 중요한 수단인 전화 통화가 지나친 경우에도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 농협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은 농민이 4개월간 수시로 총 2200여 차례 항의 전화를 한 사안에서 행위자에게 벌금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패스트푸드점에 애완 동물을 데리고 들어가 매장 내에 돌아다니거나 용변을 보게 한 사람에게 벌금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다.

불만이 있어 표현을 하거나 항의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과하게 하면 불미스러운 결과가 생기게 된다. 내 업무가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업무도 중요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대다.



도장이 빠진 유언장

제주사회복지신문 111호(2017년 1월호)

사회사업가 A씨는 백억대의 유산을 남기고 2003년 경 사망했다. 결혼을 하지 않아 자녀와 배우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는 상황에서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A씨의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유언장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Y대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거액의 재산을 놓고 이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

먼저 우리 민법의 유언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하고(유언의 요식성, 제1060조)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하며(제1065조) 그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유효하다(제1066조).

그런데 A씨는 유언장을 잘 작성해 놓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생전에도 본인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A씨이지만 이미 사망하여 진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언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학교측과 법정 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유언장은 무효이므로 재산

은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유족들의 주장이 맞선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은 결국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도장 없는 유언장 판례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본 결정이다(대법원 2006. 9.8, 선고, 2006다25103 판 결).

과연 A씨가 실수로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처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세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민사조정제도

제주사회복지신문 112호(2017년 2월호)

법률적인 분쟁이 생겼을 경우 그 최종 해결책으로 소송을 고려하게 된다.

깔끔하고 확실히 마무리를 짓고자 많은 노력을 들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항상 만족스럽지도 않을뿐더러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이미 들어간 시간과 비용이 상처뿐인 영광에 그치는 경우도 빈번하다.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전부 혹은 일부를 이기고 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민사조정제도이다.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민사조정제도는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소송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출석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며 비용 또한 저렴하다(인지대가 소송대비 1/10).

또한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가 가능해지고 감정대립이 남지 않는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합의가 되지 않을 때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처음부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진행되기도 하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원에서 조정을 개시하는 경우가 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납부하였어야 할 금액만큼 추가로 수수료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채권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113호(2017년 3월호)

법률홍닥터로 활동하며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 중 하나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알고 지내던 사이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한참동안 돌려받지 못하여 속만 끓이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매우 많은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간의 문제, 즉 소멸시효 문제이다.

소멸시효 제도

‘빌려준 돈은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속설이 있는데, 소멸시효를 한마디로 쉽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 우리 민법도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제162조 제1항)하고 있다.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이후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 그 이후로 10년이 흘렀다면 채권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여도 승소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이다.

돈을 빌려갔으면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갚아야지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불만이 있는 채권자들이 많지만, 소멸시효 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채권 소멸시효 기간

우리 민법에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기본적으로 10년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로 기간을 짧게 정한 경우들(단기소멸시효)이 있다.

의사나 약사로부터 치료, 조제를 받고 돈을 지불해야 하는 채권이나 변호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한 여관의 숙박료, 음식점의 음식료, 학생들의 수업료 등은 매우 짧은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채권,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는 법적인 책임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되고 채권자는 법적 절차로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거나 연장해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2007년 1월 1일에 친구에게 100만원을 1년간 빌려준 A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A씨는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한 2007년 12월 31일로부터 10년 후인 2017년 12월 31일 전에 소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씨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또 다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때문에 A씨는 10년마다 1번씩 동일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공소시효 제도

제주사회복지신문 115호(2017년 5월호)

지난 호에서는 민사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형사 제도에도 이와 비슷한 공소시효가 존재한다.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맞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 존재 이유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지은 죄에 대해 마땅히 벌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공소시효 제도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 가벌성이 감소하고 범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증거가 희미해져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권의 적정을 기하려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으며 대다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25년의 시효를 적용하며 그 아래로 15년, 10년, 7년, 5년, 3년, 1년까지의 공소시효를 정해두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사기죄의 경우 10년, 절도죄 7년, 폭행죄는 5년이 지나면 범인을 처벌할 수가 없게 된다.

공소시효 예외 규정

그런데 공소시효에는 예외가 있다. 우선 법에서 명문으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2015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다(일명 ‘태완이법’). 또한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의 경우에 공소시효는 그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

범인이 공소시효 기간 동안 숨어 지내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 오랜 시간이 흘렀다면 어떻게 될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못 박아 놓았기 때문에 처벌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귀국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세탁기에서 돈을 꺼내간 범인들

제주사회복지신문 116호(2017년 6월호)

최근 제주지역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속출했다. 범인들은 피해자들이 집안 세탁기나 냉장고에 넣어 놓은 수천만원의 돈을 훔쳤다가 잡혔는데 며칠동안 여러 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1억원이 넘는다. 대체 피해자들은 왜 갑자기 거액의 돈을 세탁기에 보관한 것일까?

세탁기에 돈을 넣은 이유

범인들의 수법은 이랬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인데 누군가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돈을 찾아 세탁기에 보관하라”고 한 뒤 이 말을 믿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 세탁기에 돈을 넣어 두면 집 주인 몰래 침입해 세탁기 안에 돈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것이다. 과연 이런 황당한 말을 왜 믿고 속은 것인지 이해가 안가기도 하지만 내가 이 전화를 받을 경우 이성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범인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거래 금융기관을 알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 정말 수사기관이라고 믿기가 쉽다. 게다가 은행에 저금해 놓은 내 금융 재산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침착하게 확인을 하기보다는 급한 마음에 전화기 너머에

서 시키는 대로 따라 하게 된다. 그래서 엉뚱하게 내 돈을 세탁기에 넣어 놓게 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대비 방법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대개 검찰, 경찰을 사칭하거나 우체국, 감사원,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한다. 만약 이런 곳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의심의 드는 점이 있다면 전화를 끊고 내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물론 전화번호는 걸려온 번호가 아니라 114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검증된 번호로 걸어야 한다.

공공기관 사칭 이외에도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이 있는데, 가족을 납치하고 있으니 돈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돌려줄 세금이 있으니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경우 경찰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보다 우선은 평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나 금융권 지연인출 제도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업무상 주의의무

제주사회복지신문 117호(2017년 7월호)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해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와 살펴보고자 한다. 2015년 경 한 요양원에 입소중이던 노인이 불행하게도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이 노인은 장기요양인정 2등급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환자로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었기 때문에 평소 죽이나 간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방문한 손님이 가져온 떡을 먹다가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하게 됐다.

사망 사고에 대한 판결

손님은 요양원에 입소중인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시 간식으로 떡(백설기)을 준비한 것이고, 노인들 모두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를 방으로 가져와 먹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요양원 직원으로 근무중이던 담당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이 불행한 사고에 대해 직원들에게 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의문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법원은 직원들에게 벌금형

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결정했다. 이 사안에서 직원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모든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노인이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담당 직원들이 잘 알고 있었다(혹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또한 손님이 환자에게 간식으로 ‘떡’ (백설기)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노인에게는 ‘떡’이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떡’이 잘게 썬 상태로 제공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최선을 다해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업무 태도가 위 사례와 같은 불행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때로는 사회복지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게 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분야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기대가 큰 만큼 대우와 지원의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제주사회복지신문 118호(2017년 8월호)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衣食住).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집 문제이다.

자기 소유의 집에 살면 장점이 많겠지만 여러 이유로 타인 소유의 집에 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많다. 이를 법률 용어로 주택임대차라고 하는데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이다. 임대차 보증금은 금액이 매우 크고 대부분 세입자 가정의 전재산에 해당한다.

이사할 때 주의사항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여 세입자(기존 임차인)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집을 비워주며 집 주인(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든 여유 자금에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입자(신규 임차인)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서 기존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는데 간혹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기까지 기간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에게 바로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기존 임차인은 이 약속을 믿고 먼저 이사를 가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 것은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버리는 위험한 행위다. 임차인의 지위와 재산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미리 확보해 둔 대항력을 바로 상실하게 된다. 이사만 나가지 않았으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칫하면 한 톨도 건질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면 된다.(법 제3조의3)

등기 확인 후 이사해야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우선권을 잃지 않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약간의 비용(2~3만원)이 들지만 임차인이 직접 작성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는 서류이므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에 먼저 이사를 나와야 할 상황이라면 꼭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소위 부동산등기부) 상에 등기가 올라가는 지를 확인한 이후 이사를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채무에서 벗어난 소송구조 사례

제주사회복지신문 120호(2017년 10월호)

지금까지 주제별로 칼럼을 써 오며 따로 떨어져 설명했던 몇 가지 내용들이 결합하여 탄생한 사례가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A 씨는 1990년대 말에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남편이 마구 사용한 후 대금을 갚지 않아 고스란히 빚을 떠 앉고 살게 되었다. 원금보다 몇 배로 커진 채무 때문에 잊을만 하면 날아오는 카드사의 빚 독촉은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채권양도와 소멸시효

처음에는 카드회사 이름으로, 나중에는 알만한 이름의 금융회사 이름으로 편지가 오더니 이제는 도무지 알 수도 없는 회사가 빚을 갚으라며 어려운 말로 겁을 주는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

카드 회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느껴 싼 값에 다른 회사에 A 씨에 대한 채권 즉, 돈을 받을 권리를 넘기고 손실 처리를 한다.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는 빚 독촉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더 싼 값에 또 다른 회사에 채권을 넘긴다. 이를 채권 양도라고 하는데 처음에 채권이 1,000만원 짜리였다고 하면 몇 단계를 거치면 10만원에 이 권리를 산

새로운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기도 한다. 법적으로는 1,000만원(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독촉에 견디다 못한 채무자는 힘겹게 전액을 다 갚기도 한다.

그런데 보통 이런 채권들은 몇 호 전에 설명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진 상태가 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다.

‘소송구조’ 신청이란

채권자가 A 씨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A 씨는 법정에 나아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 되지만 실제로 이를 수행할 만큼의 능력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소송구조’다.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부족하여 직접 소송에 임할 여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무료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해 진다. 간단한 양식인 소송구조신청서와 기초생활수급대상 증명서 등의 서류만 준비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송구조 여부가 결정된다.

A 씨는 더 이상 독촉편지에 숨이 막히는 고통을 겪지 않는다.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하여 무료로 선임된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였고 채권자는 재판에서 패소해 더 이상 A 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소년 가정의 상속관련 문제

제주사회복지신문 121호(2017년 11월호)

중국집을 운영하던 K씨는 부인이 가출을 하여 연락이 두절되자 술에만 의존하는 생활을 하였고 큰 빚만 남긴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 자녀 A군(17세)과 B군(14세)만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다. 아버지가 남긴 빚뿐만 아니라 그동안 살던 집에 더 이상 월세를 내지 못하여 쫓겨나게 되는 상황에서 미성년 형제들은 주민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다.

미성년 후견인 선임

두 형제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이들을 대신할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어머니는 가출을 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친권을 잃었고 다른 성인(주로 친척)이 새로운 법정대리인(‘미성년 후견인’이라고 함)이 되어야 한다.

이들 형제의 경우에는 주거, 생계비 지원과 상속포기 절차를 도울 이모가 임시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모의 도움으로 LH가 제공하는 소년가장 임대주택 지원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형제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어 당장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었다.

상속재산의 포기

K씨가 남긴 빚은 이들 형제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였기 때문에 상속포기절차를 통해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

상속재산포기는 법원에 신청하는 일종의 소송으로 K씨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다만 상속 포기의 경우 다음 순위인 친척들에게 빚이 넘어가게 되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위 과정은 많이 복잡한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이 소년들이 스스로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두 형제는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마련함으로써 다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인생

제주사회복지신문 122호(2017년 12월호)

80세의 A할머니는 한 평생을 이름 없이 살아왔다. 분명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등록된 신분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조차 갖지 못한 상태로 노숙생활을 하며 살았다. A할머니에게는 신체, 지체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아무리 아파도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할머니에게는 자녀가 있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병원 치료가 절실해진 시점까지도 법적인 신분을 찾아드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요양병원에 입소하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자녀들은 이제라도 할머니를 위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용어부터 이름이 낯설다.

성본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신청

우선 A할머니는 법원으로부터 성과 본 창설 허가를 받아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다시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아 지자체에 창설 신고를 하여야 법적으로 신분이 부여된다. 이러한 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본인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분이기에 이 심판 청구를 위한 대리인

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적인 신분을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을 맡은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한 철저한 확인을 거쳐 신분 관계를 창설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보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이나 성장에 관련된 진술서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성과 본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바탕으로 A할머니의 신분관계 서류 창설이 완료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해지고 건강보험 가입 및 요양병원 입소 등의 지원이 가능해지게 된다.

신분관계서류 창설 및 사회복지서비스 혜택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한 신분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A할머니와 같은 사례의 해결은 꼭 필요하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제주사회복지신문 123호(2018년 1월호)

A씨(여, 50대)는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으며 살아 왔다.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자고 있던 아이를 깨워 때리기도 하였다.

A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한 적도 있지만 남편은 이혼의 대가로 큰 돈을 요구하면서 이후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남편의 폭력은 정도가 점점 심해졌고 A씨는 아이와 함께 집에서 나와 따로 살면서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주민등록 열람제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월세와 생활비를 벌어보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했지만 가정주부가 갑자기 일을 시작하다 보니 수입은 너무도 부족했다.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 청구

이 상황에서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재판상 이혼 소송이다. 부부의 협의로는 이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남편과 분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A씨가 법원 재판 과정에서 남편과 마주치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의 소송구조 기관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이 선임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

소송구조를 통해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A씨의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혼절차는 마무리된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혼 전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때 A씨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의 복지 급여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등의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공 요금의 할인, 각종 수수료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이나 보육관련 서비스의 우선 제공 등이 가능하다.



통장에서 사라진 기초생활수급비

제주사회복지신문 124호(2018년 2월호)

B씨(남, 50대)는 지적 장애인으로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며 고령으로 인해 신체 거동이 불편한 누나의 보호 아래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어느 날 B씨와 누나는 은행으로부터 예금통장에서 돈을 출금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항의하였다. 은행직원은 압류추심 결정문을 보여주며 B씨와 누나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해주었지만 온통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 뿐이었다.

압류방지통장으로 수급비 보호를

B씨는 2016년에 서울의 법원으로부터 소송 서류를 받은 적이 있었다. 2006년에 발생한 채권 650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송이었는데 B씨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해 그냥 방치하였고 소송은 B씨의 이의 제기가 없어 원고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다. B씨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가 문제였다. 사실 B씨는 2006년 경에 실종상태로 서울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이 때 누군가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위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향후 수급비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수급비가 일반 통장으로 입금되면 다른 돈과 섞이게 되어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압류방

지통장은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전용 통장으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으로 압류를 풀자

다음으로는 현재 통장 안에 묶여 있는 금액의 일부를 찾기 위한 압류 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법원에 하여야 한다. 만약 채권자가 위 예금을 이미 찾아간 후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가 찾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은 모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예금주가 혼자 힘으로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서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자의 최고 한도는?

제주사회복지신문 125호(2018년 3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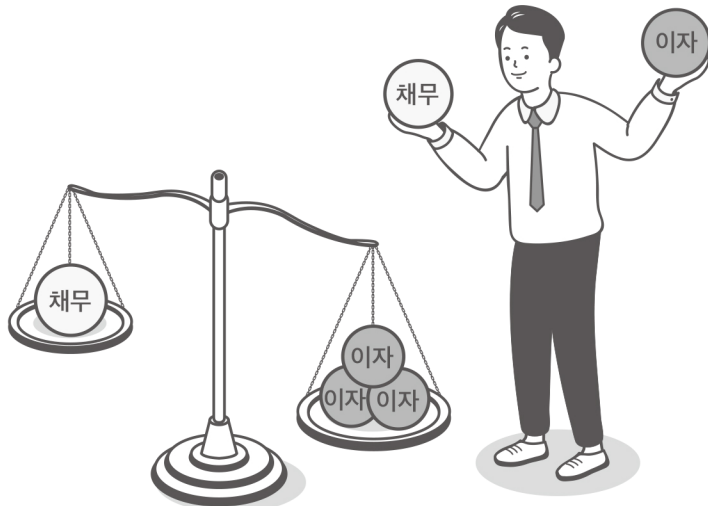
여유 자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급할 때 돈을 빌려 쓰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흔한 일이다. 아주 친한 사이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이자를 주고 받지 않기로 하는데 이는 매우 예외에 해당하고 보통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사이에 일정한 이자를 약속하게 된다. 만약 친구에게 내 돈 1,000만원을 1년간 빌려주면서 이자를 300만원(연간 이자율 30%) 받기로 약속했을 때 당사자들만 합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이자의 상한을 정하는 법

경제 영역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제한의 이자를 허용하게 되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의 굴레에 빠질 위험성이 커진다. 소액을 빌려도 일 주일, 한 달 만에 원금의 몇 배가 된다면 채무불이행 상태가 심화되고 범죄와 연결되거나 더 큰 사회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법은 경제주체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 처벌을 받는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대부업법’)이 바로 그것이다.

통일된 최고 이자율 24%

이자제한법은 일반 사인간의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것이고 대부업법은 등록된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친구간에 30%의 이자를 주고 받기로 한 것은 이자제한법 위반이 되어 돈을 빌려준 친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얼마 전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25%, 대부업법상의 한도는 27.9%였다. 그러나 2018. 2. 8.부터 법정 최고 금리는 두 법 모두 24%로 조정되었다. 이 날짜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연장되는 금전 거래에서는 최대 연간 24%의 이자만 약정할 수 있고 이보다 높은 이자를 받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것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억울한 처벌 위기에 놓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도움을 준 사례

제주사회복지신문 128호(2018년 6월호)

B씨(남, 60대)은 중증 장애를 가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근로능력이 없어 다른 수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로 생활하고 있다. 최근 상해 혐의로 약식명령(벌금 7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차피 벌금이 선고되어도 납부할 방법이 없었고 재판을 받으러 법원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로 큰 어려움이 있어 자포자기의 마음만 들던 상황이었다.

B씨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하여 하소연을 하며 도움을 청하였고 담당 사회복지사는 법률 문제로 판단하여 법률홈닥터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B씨는 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자마자 본인이 당한 억울한 일을 설명하며 감정이 앞서 욕설을 쓰고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나라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배정된 국선변호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쌓인 불만이 섞여 있었는데 B씨가 왜 화가 난 것인지는 한참이 지나서야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다.

B씨가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대중교통 버스의 운전기사를 지팡이로 폭행한 점에서 비롯되었다. 귀가를 위해 시내 버스를 탔는데 노선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고 본인이 생각하는 길이 아닌 다른 노선으로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 자신을 내려달라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버스 기사와 시비가 붙게 된 것이었다. B씨는 본인이 버스를 잘못

탄 점을 모른 상태에서 기사와 말싸움을 하였는데 그 기사가 자신의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몸싸움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B씨는 중증 장애인이었다고 지팡이로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히려 지팡이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서 있기조차 어려운 몸 상태였다.

기사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선뜻 합의를 해 주었고 본인은 이제 사건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선변호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답답하고 화가 났다는 것이다.

B씨는 재판을 포기할 필요도,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오히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잘 이야기 하면 받지 않아도 되는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었다. 본인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이야기 하는 기술이 부족할 뿐이지 B씨의 사연은 그 자체로 안타까운 구석이 많았다.

결국 B씨의 사정과 진정성은 재판부에 잘 전해지게 되었고 그의 사정을 참작하여 첫 공판에서 바로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 벌금 납부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B씨는 지금껏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은 없었다면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준 법률홍닥터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례

제주사회복지신문 129호(2018년 7월호)

A씨(여, 60대)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근로능력이 없어 다른 수입 없이 국민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A씨는 얼마전 서울의 한 지방 법원으로부터 소송관련 서류를 받았으나 그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건강과 비용상의 문제로 육지로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지금은 이혼한 전 남편이 아주 오래전 부인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이런 저런 빚 독촉을 수 없이 받아왔기에 서류나 소송이 처음은 아니었다. 또한 본인이 사망하면 빚이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파산을 알아보며 소송서류를 방치해 두고 시간만 흐르고 있었다.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였고 담당 사회복지사는 법률 문제로 판단하여 법률상담터에게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하였다. 마침 매 짝수월에 실시하는 정기 무료법률상담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었다.

A씨가 받은 소송서류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었고 법률상담터 변호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A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내용이었다. 다시 말하면 처음 돈

을 빌려준 신용카드 발급회사가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회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A씨는 그동안 많은 빚 독촉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이번 건이 어떤 채권에 대한 것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전 남편이 언제 어떻게 쓰고 갚지 않은 것인지 추적조차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맞설 엄두가 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신속한 절차를 개시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였지만 A씨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법원 출석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이의신청서 및 소송구조신청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의뢰인이 기초수급자인 점과 출석이 불가능함을 밝혀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는 서울 지역에서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것이다. 그렇지만 A씨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홈닥터는 소송구조를 지원할 변호사를 찾도록 수소문 하여 무료로 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었다.

A씨가 적극적으로 나오자 채권자인 원고가 소취하 신청을 하였다. 이대로 소송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 취하의 경우 언제든 다시 소송 제기가 가능한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었기에 채무 독촉에 더 이상 시달리기 원치 아니하는 A씨의 의사에 따라 소송은 계속 진행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채무 독촉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A씨는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혼자 힘이었다면 소송 구조신청이나 변호사 선임 등을 엄두도 못 내었을텐데 법률홈닥터가 있었기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법률 정보 안내 사례집



펴낸곳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발행인 고치환

발행일 2018년 12월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1(화북1동) TEL. 064)702-3783~4

적극적인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안전한 사회복지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인권사랑방’ 운영

우리 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 사회복지현장 근무자의 인권옹호를 위한 ‘사회복지 인권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

-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침해사례 발굴 및 접수·상담, 법률지원
- 인권관련교육 : 시설 이용자 및 근무자 인권교육, 인권강사 양성교육 등
- 사회복지현장 인권침해관련 국내외 사례 수집 및 전파
- 사회복지현장 인권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포상 추천

○이용방법 : 상담콜 또는 전용 E-mail을 이용한 초기상담 이후 지원방법이 안내됩니다.

- 상담콜 : T. 702-3782(변호사 또는 담당직원이 응대)
- 전용 E-mail : tohic@naver.com(변호사만 확인 가능)
- ※ 상담 의뢰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됩니다.

‘법률홈닥터’ 사업 추진

‘법률홈닥터사업’은 법무부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복지협의회를 거점으로 변호사 자격소지자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을 위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1차 법률 서비스 제공

- 법률상담·교육, 법률정보제공, 법률관련 문서작성 지원 등

○이용대상 : 개인, 사회복지시설·단체

○이용방법 : 전화로 상담신청 및 상담일정 협의(변호사 직통전화 T.702-3782)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실(www.jejubokji.net - 초기화면의 우측 콕메뉴)이용

○이용시간 : 매주 월~목요일, 10:00 ~ 17:00(변호사와 협의될 경우 조정가능)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법률 정보 안내 사례집